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49
----------	------------

제안년월일: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순환관람차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휴무일, 이용료 감면 및 이용료 반환, 안전의무,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조례안의 형식과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7조).
-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전의무,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3. 참고사항: 생략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생태환경”을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생태환경”으로,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활성화”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 “순환관람차, 시설 등”으로 한다.

안 제3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안 제3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순환관람차의 운영)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행범위 및 노선) ① 순환관람차의 운행범위는 한강공원 내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한강공원별 위치, 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순환관람차 운행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기간
2. 태풍, 폭우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순환관람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
2. 출발 전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전의무)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의 원활한 운행,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 시설 등을 점검·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순환관람차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미 탑승한 경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정당한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안 제5조의 제목“(노선 및 운행범위)”를“(운행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순환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안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안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65세 이상 또는 6세 미만의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7.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8. 순환관람차 시범운영기간,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 및 행사 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순환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이동약자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관람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순환관람차 최대 탑승 인원보다 많은 경우 이동약자가 우선 탑승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안 제12조(종전의 제8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운행노선”을 “운행노선 및 제5조에 따른 운행시간”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u>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u>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이용 편의성 제고 및 생태환경</u>----- <u>활성화</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4. “이용자”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u>시설</u>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한다</u>----- ----- -----.</p> <p>2. ~ 3 (제정안과 같음)</p> <p>4. ----- --- <u>순환관람차, 시설 등</u>----- -----.</p> <p>5.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순환관람차의 명칭) 제2조제2호에 따른 순환관람차의 명칭은 “<u>한강해치카</u>”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순환관람차 운행지역의 특성 및</p>	<p>&lt;삭 제&gt;</p>

이용자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순환관람차의 운영)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관람차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범위 및 노선) ① 순환관람차의 운행범위는 한강공원 내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한강공원별 위치, 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순환관람차의 운영)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한강  
공원의 성격,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한  
다.

<신 설>

<신 설>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 누구  
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관람차를 무료로 운영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순환관람차 이용자에

제5조(운행시간) ① 순환관람차 운행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순환  
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  
다.

제6조(휴무일) 순환관람차 운행 휴무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기간
2. 태풍, 폭우 등 기상조건을 고려  
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순환관람  
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 경우 -----



계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 공원 내 공연, 행사 등 관계자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이동약자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증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65세 이상 또는 6세 미만의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7.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8. 순환관람차 시범운영기간,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공연 및 행사 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  
-----.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순환관람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
2. 출발 전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전의무)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의 원활한 운행,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 시설 등을 점검·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순환관람차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미 탑승한 경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

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정당한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종류, 가입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순환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이동약자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관람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순환관람차 최대 탑승인원보다 많은 경우 이동약자가 우선 탑승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이동약자에게 편의제공)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생략)

<삭 제>

제12조(홍보) --- 제4조-----  
----- 운행노선 및 제5조에 따른 운행시간 -----.

제13조 (제정안 제9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생태 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순환관람차”란 한강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순환관람차,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동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순환관람차의 운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범위 및 노선)** ① 순환관람차의 운행범위는 한강공원 내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한강공원별 위치, 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운행시간)** ①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순환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순환관람차 운행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기간
2. 태풍, 폭우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 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65세 이상 또는 6세 미만의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7.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8. 순환관람차 시범운영기간,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 및 행사 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순환관람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
2. 출발 전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전의무)**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의 원활한 운행,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 시설 등을 점검·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순환관람차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미 탑승한 경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정당한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순환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이동약자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관람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순환관람차 최대 탑승 인원보다 많은 경우 이동약자가 우선 탑승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및 제5조에 따른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관람차 이용료 범위(제6조제1항 관련)

기준 및 이용료 범위		비 고
* 1회 탑승		
- 어린이·청소년(6~18세)	500~2,000원	
- 성인(19세 이상)	1,000~3,000원	